고양우편집중국 공고 제 2024-12호

2024년도 제4회

기간제근로자(우정실무원) 채용 공고

고양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소통관련 보조업무를 담당할 우정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22일

고양우편집중국장

1. 채용 직종 및 인원

(단위: 명)

채용직종	근무형태* (근무시간)	채용 예정 인원	담당업무	비고
기간제 근로자 (우정실무원)	중근전일제 (8h) (13:00~22:00)	6	- 우편물(소형·대형·특수 통상, 소포) 분류, 구분, 이동, 투낭 및 체결 - 고중량 우편자루 운반 및 개낭 - 고중량 파렛 운반, 차량 적재 - 상당한 체력을 요함	중복 지원 불가
	석근시간제* (4h) (18:00~22:00, 19:00~23:00)	8		
	야근전일제 (8h) (22:00~07:00)	6		

* 석근시간제의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배치부서에 따라 결정 (18:00~22:00 또는 19:00~23:00)

2. 근무 조건

1. 신 분: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(우정실무원)

2. 근로계약기간: 2024.4.3. ~ 2024.6.30. (예정)

o 근무시작일에는 업무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09시~18시 사이 출근하여 교육이수하여야 함

3. 보 수

o 기본임금(2024년 시급 9,860원) + 기타수당

o 기타수당 : 주휴수당, 직무수당, 가족수당(해당자 한), 급식비 등

- 연장근로, 휴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

o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

4. 근무일수: 주 5일 **월~금 근무**

5. 휴게시간: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,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

6. 휴　　가: 연차유급휴가, 공무유급휴가, 특별휴가 등

3. 응시 자격

1. 응시연령 : 최종 시험일 현재 만18세 이상, 60세 미만인 자

「**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**」 제62조(근무상한 연령)
-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.
-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.

2. 응시자격 제한

o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

o 결격사유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)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가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나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다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나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※ 위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

시험단계 / 채용분야	제1차 시험	제2차 시험
우정실무원	서류전형	면접시험

1. 1차 서류전형
   o 응시자의 자격요건,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·부적격 여부 판단
2. 2차 면접전형
  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
   o 제1차 서류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< 면접시험 평정요소 >

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
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⑤ 창의력·의지력·기타 발전가능성

3. 응시서류 접수
   o 공고기간 : 2024.3.22.(금) ~ 2024.3.27.(수) 18:00까지 (공고일 제외 5일)
   o 접수기간 : 2024.3.25.(월) ~ 2024.3.27.(수) 18:00까지
   방문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까지(11:30~13:00접수 불가)

4. 접수장소 : 고양우편집중국 3층 물류총괄과 (☎ 031-920-5222)

5. 접수방법 : e-mail,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o 모든 접수분은 2024.3.27.(수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 함
   o e-mail: tax40007810@korea.kr
   o 등기우편접수주소: 우)10449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. 고양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비공무원 채용 담당 앞 (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표시)
   ※ e-mail로 응시서류 접수 시, 제출서류는 PDF ·JPG 파일로 제출

6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  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4.3.28.(목)
   (개별통보 및 고양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공고)
   o 면접시험일시: 2024.3.29.(금) 오후 예정 (시간 미정)
   o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4.1.(월) 합격자 한 개별 통보
   ※ 합격자가 채용포기, 합격포기, 채용결격사유,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로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7. 제출서류(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)

o 응시원서 1부

o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
o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o 공정채용확인서

o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

o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서류 1부(해당자 한)

※ **우대 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됨 단,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**

※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, 누락(미비사항)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※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8. 기타사항

o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고양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.

o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.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,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o 야근근로자의 경우 합격 후, 특수건강검진에서 야간근로 부적합 판정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(채용 결격 사유)

o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, 합격이 취소됩니다.

o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거나 적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, 선발예정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.

o 최종합격 후, 사용자의 요청과 합격자의 동의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o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o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양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- o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고양우편집중국 방문신청, 또는 이메일 tax40007810@korea.kr,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- o 고양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.4.30.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o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(031-920-52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